

자연휴양림 지정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경기도 광주시 자연휴양림 후보지 타당성 평가를 사례로 -

임은희* · 염성진**

*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여가시간 및 소득의 증가로 국민의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산림은 여가와 관광 그리고 휴양의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5일제 근무제의 도입과 도로망의 발달 등은 산림휴양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레저에 대한 웰빙 여가활동 욕구가 증대되면서 자연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림생태·문화 공간에 대한 조성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산림휴양이나 산림치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분석 등과 연계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진행되고 있으나, 자연휴양림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주시 자연 휴양림 타당성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자연 휴양림의 타당성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휴양림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타당성 평가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및 조사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광주시의 목동현 일원, 도척면 추곡리 일원, 도척면 유정리 일원, 퇴촌면 관음리 일원, 퇴촌면 우산리 일원의

산림지역 5곳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기준을 후보지(5개소)에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자연휴양림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방법은 그 동안 수집한 자료와 현지조사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료들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III. 광주시 자연휴양림 타당성 분석 및 결과

1. 자연 휴양림 지정 절차 및 세부기준

자연휴양림 지정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5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른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의 기준은 경관(9항목), 위치(4항목), 수계(7항목), 휴양유발(3항목), 개발여건(7항목)으로 총 30개 항목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점수는 30개 항목에 1~5점으로 동일하게 배점하며, 평가점수의 합이 총점 대비 66.6%(2/3)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타당성 평가는 시·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타당성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 조사 결과서 작성을 해야 한다.

2. 자연 휴양림 평가결과

표 1.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평가항목(2018, 산림청 고시)

	평가 항목	평가 점수	
		배점	합계
1. 경관	표고 차, 환경 파괴정도, 관망지점 유무, 불쾌인자, 독특성, 입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상태, 야생동물의 종 다양성 등이 적정할 것	1~5	45
2. 위치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대중교통이용 편이성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1~5	20
3. 수계	주류장, 계류 폭, 수계 경관, 유수 기간 등 수변 이용이 가능할 것	1~5	35
4. 휴양유발	연계 가능한 역사문화자원 유무, 개발 전 이용수준, 휴양기회의 다양성 등 휴양 기회가 가능할 것	1~5	15
5. 개발여건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1~5	35

표 2. 5개 후보지 타당성평가 결과

후보지	경관	위치	수계	휴양유발	개발여건	총합
1. 퇴촌면 우산리 일원 (51.4ha)	33	18	22	11	27	111
2. 퇴촌면 관음리 일원 (45.1ha)	30	16	21	5	25	97
3. 도척면 유정리 일원 (91.3ha)	23	16	21	5	25	90
4. 도척면 추곡리 일원 (38.6ha)	32	16	12	5	23	88
5. 목현동 일원 (37.2ha)	20	18	19	5	25	87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 기준'에 의한 타당성 평가를 5개 후보에 실시한 결과, 우산리 일원이 1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음리 일원(97점), 유정리 일원 (90점), 추곡리 일원(88점), 목현동 일원(87점)순으로 평가되었다. '퇴촌면 우산리 일원'이 자연휴양림 조성에 적합한 대상으로 도출되었다.

IV. 결론

1. 자연휴양림 지정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재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로 인해 조성방향에 적합하지 않는 대상지가 선정되어,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 기준은 경관, 위치, 수계, 휴양유발, 개발여건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점수적용 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자연휴양림 조성방향과 지역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지 선정이라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광주시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결과를 보았을 때, 휴양유발 항목에서만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다른 항목에서의 점수 차이는 근소 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복수의 대상지(5개)에 평

가지표를 적용하였을 때 휴양림 조성에 어느 항목을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연휴양림의 조성목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타당성 평가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있어 적합한 대상지를 도출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항목은 휴양림 조성 목적과 지역 특성에 대하여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항목별 동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우선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각 항목 중에서 하나의 항목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타당성 평가 항목에 있어 자연휴양림의 입지 및 지역특성과 지정 목적에 따라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 광주시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역특성 및 휴양 목적에 맞는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해 타당성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로 인해 자연휴양림의 조성 목적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서경석(2012) 자연휴양림의 활용도 제고 방안.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2. 자연휴양림의 유형별 관리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 31-35.